

| 문서번호 | BSKS-2-1-10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| 1990.03.01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3.02.28. |
| 페이지 수 | 1/4 |

1990.03.01.제정 1995.03.01.개정 1997.03.01.개정 2004.12.01.개정 2006.03.01.개정 2007.03.01.개정 2008.05.20.개정 2012.08.17.개정 2014.02.01.개정 2020.04.21.개정 2020.06.19.개정 2020.07.0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2023.02.28.개정 소관부서 : 산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"본 위원회"라 한다.)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직무) 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1. 위 원 장 : 총장
- 2. 부위원장 : 산학처장 <개정 2020.09.25., 2023.02.28.>
- 3. 위 원 : 교무처장, 사무처장 및 기타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<개정 2020.09.25., 2023.02.28.>
- ②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 동아리 지도위원, 생활상담위원, 봉사지도위원 등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학생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
- 2.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
- 3. 학생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
- 4. 학생 및 학생단체 상벌에 관한 사항
- 5. 학생단체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
- 6. 학생지도활동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 <신설 2020.06.19.>





| 문서번호 | BSKS-2-1-10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| 1990.03.01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3.02.28. |
| 페이지 수 | 2/4 |

7. 기타 학생활동 및 지도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수당)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 작성)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한다.

제7조(업무관장) 본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산학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0.09.25., 2023.02.28.>

제8조(환류) 대학 학생지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학생지도 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·평가하고 환류를 실행한다.<신설 2020.06.19.>

- ① 산학처는 처에서 주관하는 학생지도 프로그램 수요도·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.<개정 2020.09.25., 2023.02.28.>
- ② 산학처 주관 사업 실행 성과와 부서 및 대학 자체 수요도 ·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를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고, 학생지도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한다. <개정 2020.09.25., 2023.02.28.>
- ③ 산학처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한 <성과 분석 및 환류 계획 보고서>를 작성하여 기획위원회에 제출한다. <개정 2020.09.25., 2023.02.28.>
- ④ 기획위원회의 심의에 기반하여 권고된 추가 개선안을 반영하여 대학의 학생지도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.
- ⑤ 환류 계획을 대학 홈페이지 환류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유한다. 필요시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지도 개선을 위한 환류보고서 등의 작성을 통하여 성과분석 및 개선안, 개선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다.
- ⑥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지도 활동 개선 실적을 중간 점검하고, 추가 개선안을 제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



| 문서번호 | BSKS-2-1-10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| 1990.03.01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3.02.28. |
| 페이지 수 | 3/4 |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4.21.)에 의하여『산학처』를『산학취업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

| 문서번호 | BSKS-2-1-10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| 1990.03.01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3.02.28. |
| 페이지 수 | 4/4 |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7.03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교학처』에서 『산학취업처』로 이관하고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『교학처』를『교무처』로 ,『산학취업처』를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